II. 현안 및 과제

1. 4대 경협 합의서 발효의 의미와 효과

- **(개관) 제2차 남북경제협력 제도실무협의회에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포함한 5 개항에 합의하였음**
  - ·가장 큰 성과는 4대 경협합의서의 발효(8. 6)를 비롯하여, 청산결제 은행 선정과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의 채택임
  - ·4대 경협합의서는 ▲투자보장 합의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청산결제 합의서 ▲상사분쟁해결절차 합의서임

- **(의미과 효과) 북핵 위기 속에서도 6.15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과 남북경협 확대에 대한 북한 당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함**
  - ·**(의미)** 남북한 당사자 해결의 원칙 하에, 남북 양측은 상대편 지역에서 안전하고 차별없는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2000년 12월의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서명한 지 2년 반만에 빛을 발하게 되며, 특히 경협 합의서 발효 일정의 확정은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임
  - ·**(효과)** 대북 투자의 불안감과 불확실성 해소, 소득세 경감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와 교류 협력 활성화는 물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도 크게 기여
  - ·특히 이번 합의는 개성공단 착공식에 이은 조치로서, 본격적인 대규모 투자 사업을 위해 개성공단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

- **(보완 과제) 형식은 합의서이되, 내용상으로는 국가간 '조약'의 형태로 체결하여 합의 이행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처하여 규정의 국제화를 추구**
  - ·**(투자보장)** 최혜국 대우가 아닌 내국민 대우로의 전환과 민족 내부 합의서로의 국제적 인정 획득 방안 모색이 요구됨 ➡ 이는 이중과세방지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남북교역이 확대될 경우 WTO나 제3국의 국제 통상 규범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공공 목적의 투자 자산 수용시의 보상 문제와 국제시장 가치로의 환산 기준 및 보상금 지급 방식에 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세분화하고 이를 명문화해야 함
  - ·**(청산결제)** 청산결제의 대상 품목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와 대월한도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이의 세분화 및 명문화가 요구됨

·청산결제 대응 물품의 부족과 북측의 외화난 상황에서, 청산결제로 반출이 급증하여 남한의 일방적인 교역 흑자가 확대될 수 있음에 대비하여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의 모색이 시급함

·(상사분쟁해결) 중재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사중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문제의 조속한 합의와 함께, 분쟁 해결 결과가 법률적·행정적 효력(구속력)을 갖도록 북한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가입을 유도함

·(기타) 개성공단 착공에 따르는 남측 인력의 신변보호를 위한 민간인 자유 통행 문제와 함께, 이들 남북경협 실무 협상과 기업 활동 지원을 전담해줄 수 있는 '경제상주대표부'의 조속한 설치 합의가 필요함

< 남북경협 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효과 >

분야	주요 내용	기대 효과
투자 보장	-투자자와 투자자산의 최혜국 대우 및 수익금의 자유 송금 보장 -공공 목적 이외의 투자 자산 수용과 국유화의 원칙적 금지 ·공공 목적으로 수용시, 국제가격으로 보상	-대북 투자의 불안감과 불확실성 해소 -투자 관련 분쟁의 사전 예상 및 해결 장치 마련으로 대규모 투자와 교류 협력 활성화 기대 ·투자 관련 정보의 상호 교환에 합의
이중 과세 방지	-소득면제방식의 채택 ·이 방식은 어느 한 쪽에서 세금을 납부했으면 다른 쪽에서는 아예 세금을 면제함 ·세액공제방식은 한 쪽에서 과세했어도 다른 쪽에서는 세율 차액만큼 추가 과세함	-대북 진출 기업의 소득세 경감 효과 ·남한(28%)의 절반 수준인 14% 납부 ·상대 지역에 사무소 등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
청산 결제	-교역 건별로 매번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간 거래 대금(누적 차액)을 청산결제 은행을 통해 결제 -청산결제 거래의 상품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 한도 등에 대한 합의 필요	-대금 회수의 보장으로 결제 위험 축소 -환전과 송금 절차의 간소화로 비용과 시간 절감 효과, 환율 변동 위험 축소 -일단은 농산물, 광물의 우선 적용 예상 -남북한 화폐 통합을 촉진
상사 분쟁 해결	-납기 지연 및 제품 불량 등 상대편의 합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제소함 -남북한 당사자 해결 원칙의 우선 규정 ·협의로 미해결시에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로 해결. 구체적 방법은 추후 협의	-엄격하고 공정한 규정 적용으로 분쟁 처리 절차의 투명성 제고 ·개성공단 진출을 앞둔 기업들에게 남북경협의 불안정감을 크게 완화
원산지 확인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증명서의 진위 점검 ·남측의 세관과 상공회의소,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발급	-남북교역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북측에게는 북한산 제품 반출 기회 확대를, 남측 소비자에게는 중국산 제품의 북한산 둔갑 피해 방지 효과